

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 : 이새날 의원
- 나. 의안번호 : 제2715호
- 다. 발의일자 : 2025년 5월 23일
- 라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
2. 제 안 이 유

- 서울로 7017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자전용길에서 자동차, 자전거,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통행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‘서울로 보행자전용길’을 정의함(안 제2조제4호 신설)
- 나. 시장의 책무로 시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서울로를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 보장하도록 함(안 제3조)
- 다. ‘서울로 보행자전용길’에서 「도로교통법」에 의한 자동차, 자전거,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통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제2항)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도로교통법」,
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로 7017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자전용길에서 자동차, 자전거,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통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‘서울로 7017(이하 “서울로”)’은 노후 고가도로의 구조 보강, 시설 개선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고가 보행로(’17.5.20. 개장)로 운영·관리되고 있는 시설로 현행 조례는 시민에게 쾌적한 보행 및 녹지 환경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(’17.7.13.)된 바 있음.

‘보행환경’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2021년 「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였고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‘킵보드 없는 거리’를 지정¹⁾ 하는 등 보행편의 제고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.

- ‘서울로’는 고시²⁾를 통해 ‘보행자전용길’로 지정된 ‘보행로’이나, 아직까지 현행 조례에 ‘보행자전용길’에 대한 정의가 없고 차량 통행 제한에 관한 사항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- 세부적으로 안 제3조제1항은 「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³⁾를 준용하여 시민들의 ‘보행권’을 보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강화

1) 서울시 교통실 보행자전거과(’24.11.5.), “전국 최초 ‘킵보드 없는 거리’ 지정… 시민 80% 보행 중 불편 겪어”

2) 서울특별시고시(제2017-119호, ’17.4.6): ‘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’

3)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보행권"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2. "보행자길"이란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.
3. "보행환경"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·생태적·역사적·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.
4. "보행자우선도로"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.

하는 것이며, 안 제12조제2항은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제5항에 따라 「도로교통법」에서 정한 ‘차마⁴⁾’ 운전자가 ‘서울로 보행자전용길’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.

안 제12조제3항은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 제22조(금지행위 적용대상)⁵⁾를 근거로 서울로 내 거리가게에 의한 상행위 금지 및 예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공원관리청의 일관된 정책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.

4) 제2조(정의) 17. “차마”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.

가. “차”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- 1) 자동차
- 2) 건설기계
- 3) 원동기장치자전거
- 4) 자전거

5)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(動力)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. 다만, 철길이나 가설(架設)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, 유모차, 보행보조용 의자차, 노약자용 보행기,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·장치는 제외한다.

나. “우마”란 교통이나 운수(運輸)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.

5) 제22조(금지행위 적용대상) ① 누구든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에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청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의 경우에는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주최·주관하는 행사의 상행위
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·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
3. 그 밖에 모든 시민에게 문화·예술·체험·여가 등의 기회제공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행사의 상행위